

인도네시아 신선농산물 수입제도

I 인도네시아 수입제도 현황

□ 식품 수입 제한

- 인도네시아는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신선 식품을 포함한 수입품에 대하여 여러 수입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고 이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수입업자 뿐만 아니라 수출국과의 무역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음
- 2014년 뉴질랜드는 미국과 함께 인도네시아의 원예작물, 축산물에 대한 광범위한 수입제한 조치에 대해 항의
 - 인도네시아 정부가 수입식품에 부과한 여러가지 조치가 가트(GATT, 1994: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농업 협정, 수입허가협정 및 선적전 검사협정에 명시된 규정을 위반한 수입수량 제한이라고 공동 항의하였음
 - 2016년 12월, WTO는 인도네시아가 가트(GATT, 1994) 규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렸고 그 결과 인도네시아는 수입조치에 있어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 받았음
- WTO의 결정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 이후 인도네시아의 무역 정책에 변화가 나타남
 - 그 변화들 중 하나는 수입 쿼터를 없애고 동물과 축산물에 대한 수입을 구제역 청정 국가로 제한하는 것 대신 국가 내에서도 구제역 청정 지역에서 수입을 허가하는 것임
 - 2017년 6월 기준 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로 신선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국가 승인서, 수입허가서(IP: Import Permit)와 같은 등록 및 허가증 요구와 함께 복잡한 절차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남
 - 수입 쿼터가 철회되었지만 식품에 대한 수입물량은 수입업자가 수입허가서(IP)를 통해 배정받은 물량만을 수입해야 하고 쌀과 같은 식품과 원예작물은 특정 기간 동안만 수입이 허가 됨

- 공식적으로 수입 쿼터는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쌀, 소고기, 주류와 수산물에 대한 수입허가서(IP)의 허용 물량을 규정하여 식품 수입을 제한하고 있음
- 원예작물은 시기별 수입 가능 품목을 제한하고 있으며, 개별 수입업자의 수입허가서(IP)에 기재된 할당량에 따라 수입량도 규제됨. 수입허가서(IP)를 허가하는 무역부는 무역업자 당 수입 할당량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출업자와 수입업자에 대한 수입 물량 배정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음
- 수입허가서(IP) 취득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서류 작업이 요구되므로 수출업자들은 규제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는 포워딩업체나 수입업체와 같은 현지 파트너의 조언을 얻는 것이 필요함

□ 식품수입 관련 규정

-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AKFTA)
 - 2016년 체결된 한-ASEAN (ASEAN: 동남아 국가 연합)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에 따라,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ASEAN 국가와 한국간의 무역에 있어 특혜관세가 적용됨
 -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수입업자는 수출업자로부터 원산지 증명서(C/O)를 받아야 하며, C/O는 대한 상공회의소(KCCD) 에서 발급 받을 수 있음
- 식품법 제 18/2012 호
 - 정부 규정 식품법 제18/2012호는 식품법 제07/2006호의 개정안으로써 식품 수입 규정을 포함한 인도네시아의 식품 관련 규정을 반포하는데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해당 규정은 식품에 대한 포괄적 법률이며 특정 식품에는 특정 규정이 적용됨
 - 본 식품법은 쌀, 옥수수, 콩 및 소고기 같은 주요 식량원의 국내 생산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 식품 안전을 보장하고 식량 주권 및 식량의 자급자족 강화를 위해 2012년 개정되었음
 - 본 식품법의 제 4조에는 주요 식량원의 안정적 공급, 보존, 유통, 관리를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의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국내 식량 수요 충족을 위해 정부가 국내 식량 생산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식량 생산이 충분하지 않을 시 필요에 따라 식량을 수입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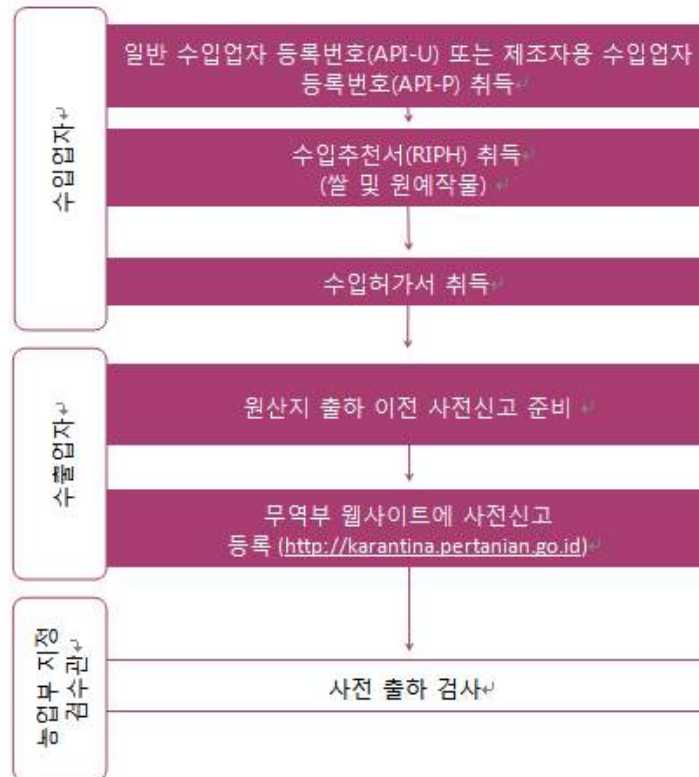
- 제 4조의 5항은 식량 수입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상세히 열거하고 있음
 - 1) 식량의 국내 생산 부족 또는 국내 생산 불가 시
 - 2) 식량의 국내 생산 및 국내 보유량이 부족할 경우
 - 3) 주요 식량 생산 및 정부의 식량 보유량 충족 여부는 식량 부문의 정부 행정 명령 수행을 일임한 장관 또는 정부 기관에 의해 결정

○ 원예작물 수입 관련 법률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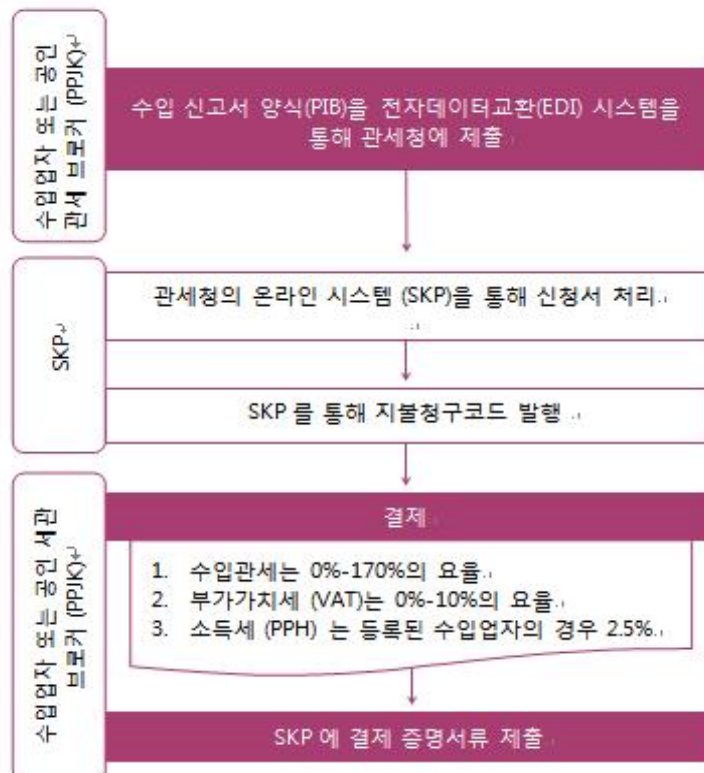
- 2015년 쿼터량의 80% 이상 수입 규칙이 삭제되었음에도 원예작물 수입은 제품 종류와 원산지에 따라 다음의 농업부 및 무역부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고 있음. 원예작물은 수입일정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며 이 일정은 일 년 중 각 물품이 수입될 수 있는 시기를 명시하고 있음
- 원예생산물 수입 권고사항에 관한 농업부 장관 규정(Permentan/HR.060/5/2017)
 - 이는 2017년 5월에 규정 86/ Permentan/ OT.140 /8 /2013 을 개정된 새로운 규정임
 - 동 규정에 따라 수입업자는 수입허가서(SPI)를 신청하는 즉시 원예작물 수입추천서(RIPH-Rekomendasi Impor Produk Hortikultura)를 농업부에서 취득해야 함
- 원예작물 수입조항에 대한 무역부 장관 규정(Permentan/HR.060/5/2017)
 - 이전 규정71/M-DAG/PER/9/2015의 개정안으로서, 수입업자가 수입 허용량의 최소 80%를 수입해야 하는 조항을 삭제
 - 원예작물의 수입허가서(IP)를 보유하고 API-U 또는 API-P를 보유한 회사에 한하여 원예작물 수입을 허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API 보유자는 매년 11월 수입추천서(RIPH)를 신청 할 수 있음. 현재 이전 규정에 따라 원예작물 수입추천서(RIPH)를 보유한 회사는 다음 해에 다시 새로운 수입추천서(RIPH)를 신청하여야 함

□ 신선농산물 수입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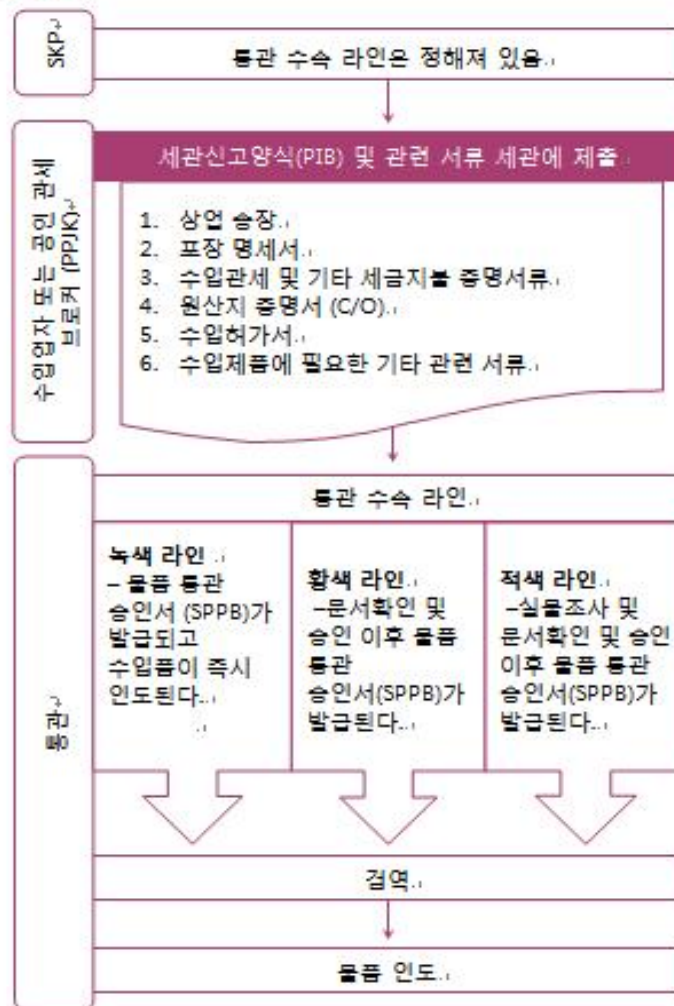
■ 수입전



■ 수입관세 및 세금 해결



• 통관 수속..



II

신선농산물 및 원예농작물 관련 규정

□ 식물유래 신선식품(FFPO)

○ 농업부 규정 제 55호 /Permentan/KR.040/11/2016에 다음 100종의 식물 유래 신선식품(FFPO)을 열거하고 있음

- 1) 과일 43종 : 포도, 아보카도, 사과, 살구, 베리류, 블랙 베리, 블루 베리, 무화과, 보이든 베리, 멜론, 체리, 크랜베리, 감귤류 과일, 건포도, 듀베리, 두리안, 구즈베리, 그 레이프, 오렌지, 롱간, 건포도, 키위, 라이치, 레몬, 만다린, 망고, 멜론, 멜론, 파인애플, 넥타 린, 파파야, 복숭아, 감, 바나나, 배, 자두, 사독 / 포멜로, 자두, 라스베리, 스쿼시, 커스터드 사과, 딸기
- 2) 채소 35종 : 양파, 마늘, 시금치, 사탕 무우 뿌리, 사탕무, 브로콜리, 콜리 플라워, 칠리 고추, 치커리, 파, 양배추꽃, 절임오이, 옥수수, 버섯, 감자, 케일, 콜라비, 양배추, 브뤼셀 콩나물, 배추, 리마 콩, 무, 순무, 오이, 파프리카, 양상추, 샐러리, 토마토, 가지, 고구마, 당근
- 3) 곡류 7종 : 보리, 쌀, 밀, 옥수수, 귀리, 호밀, 사탕수수
- 4) 견과류 6종 : 아몬드, 헤이즐넛, 마카다미아 너트, 피스타치오, 땅콩, 피칸
- 5) 콩류 5종 : 콩, 녹두, 누에콩, 무지개콩, 완두콩
- 6) 농작물 4종 : 커피콩, 후추, 사탕수수, 차

□ 신선농산물 수입조건

○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승인 국가

* 한국은 현재 승인절차를 밟고 있음(2017 년 6 월 현재)

○ 식품안전시험기관 또는 연구실이 등록된 국가

- 1) 전자 사전 통보
- 2) 분석 증명서(CoA)

○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이 승인되지 않고 연구실이 등록되지 않은 국가

- 1) 전자 사전 통보
- 2) 원산국의 관할 식품안전당국 또는 공인 자격기관에서 발행한 식품 안전 증명서

3) 인도네시아 도착 시 식물 유래 신선식품(FFPO)의 감시 빈도가 높아지며, 수입업자에 실험실 테스트 비용이 청구됨

○ 다음 조건에 해당 되는 국가들은 해당 승인이 유예되거나 철회됨

- 1) 감시 프로그램의 실험실 테스트 결과 중 5가지 위반 사항이 발견될 시 원산국의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승인이 유예됨
- 2) 감시 프로그램의 실험실 테스트 결과 중 4가지 위반 사항이 발견될 시 식품 안전성 테스트 실험실 등록이 취소됨
- 3) 같은 유형의 식물유래 신선식품(FFPO)에 대한 감시 프로그램의 실험실 테스트 결과 중 3 가지 위반 사항이 발견될 시 FFPO 수입이 중단됨

□ 원예작물 수입추천서(RIPH)

- 농업부 장관 규정 제 16호(Permentan/HR.060/5/2017)에 따라 수입업자는 원예작물 수입 시 원예작물 수입추천서(RIPH)를 취득하여야 함
- 2018년부터 새로운 농업부 규정에 따라 다음해의 수입허가서 취득을 위해 매년 11월에만 RIPH를 신청할 수 있음
- 이전 규정에 따라 현재 RIPH를 보유하고 있는 수입업자는 2017년 말까지 현재의 RIPH를 사용할 수 있으나, 2018년 수입을 위해서는 신규 RIPH를 신청해야만 함
- RIPH는 1년에 한 번 발급되고, 당 해 12월까지 유효함
- RIPH를 발급받아야 하는 54개 품목 HS 코드

- 채소

번호	HS 코드	품목
1	0701.90.10	감자, 신선 또는 냉장 - 가공용 <u>생감자</u>
2	0701.90.90	감자, 신선 또는 냉장 - 기타
3	0703.10.19	양파, 신선 또는 냉장 - 기타
4	0703.10.29	<u>샬롯</u> , 신선 또는 냉장 - 기타
5	0703.20.90	마늘, 신선 또는 냉장 - 기타
6	0706.10.10	당근, 신선 또는 냉장
7	0709.60.10	기타 채소류, 신선 또는 냉장 - 칠리
8	0710.10.00	채소류, <u>냉동</u> - 감자
9	0712.90.10	<u>건채소</u> , 통, 절단, 저민, 분쇄 또는 가루, 조리용 아님- 마늘

- 과실류

번호	HS 코드	품목
1	0803.10.00	플랜테인 포함 바나나, 신선 또는 건조 - 플랜테인
2	0803.90.10	플랜테인 포함 바나나, 신선 또는 건조 - <u>레이디 핑거 바나나</u>
3	0803.90.90	플랜테인 포함 바나나, 신선 또는 건조 - 기타
4	0804.30.00	파인애플, 신선 또는 건조
5	0804.50.20	망고, 신선 또는 건조
6	0804.50.30	<u>망고스틴</u> , 신선 또는 건조
7	0805.10.10	오렌지, 신선
8	0805.21.00	감귤, 신선(<u>밀감</u> 및 <u>유즈마</u> <u>과</u> 포함), 신선 또는 건조
9	0805.22.00	클레멘타인, 신선 또는 건조
10	0805.29.00	감귤 (<u>밀감</u> 및 <u>유즈마</u> <u>과</u> 포함), <u>클레멘타인</u> , <u>윙킹</u> 및 유사 고배종, 신선 또는 건조 - 기타
11	0805.40.00	<u>그라이프프루트</u> , <u>포멜로</u> 포함, 신선 또는 건조
12	0805.50.10	레몬 (<u>시트러스 레몬</u> , <i>Citrus limonum</i>), 신선 또는 건조
13	0805.50.20	라임(<i>Citrus aurantifolia</i> , <i>Citrus latifolia</i>), 신선 또는 건조
14	0805.90.00	감귤류, 신선 또는 건조 - 기타
15	0806.10.00	포도, 신선
16	0807.19.00	멜론 (수박포함) 및 파파야 (papayas), 신선 - 기타
17	0807.20.00	파파야 (papayas), 신선
18	0808.10.00	사과, 신선
19	0810.60.00	<u>드리안</u> , 신선
20	0810.90.10	<u>통간</u> , <u>마타 쿠티</u> , 신선
21	0810.90.92	통과, 신선

- 가공식품

번호	HS 코드	품목
1	0813.40.10	통간, 건조
2	0904.21.10	칠리 (<u>캡시컬 열매</u>), 건조
3	0904.22.10	칠리 (<u>캡시컬 열매</u>), 분쇄 또는 파쇄
4	2004.10.00	기타 조제 또는 보존 처리한 채소로써 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한 것, 냉동된 것이며, 제 20.06호의 <u>물품(감자)</u> 을 제외한 것
5	2005.20.11	기타 조제 또는 보존 처리한 채소로써 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한 것, 냉동된 것이 아니며 제 20.06호의 <u>소매용 밀폐용기에 담긴 균질화한 채소</u> 는 제외한 것
6	2005.20.19	기타 조제 또는 보존 처리한 채소로써 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한 것, 냉동된 것이 아니며, 제 20.06호의 <u>물품 (감자, 기타)</u> 을 제외한 것
7	2007.91.00	잼, 과일젤리, <u>마말레이드</u> , 과일 또는 견과류의 <u>퓨레</u> 및 과일 또는 견과류 <u>페이스트</u> 조리해서 얻은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 또는 그 밖의 감미료(<u>감글류</u>) 첨가 여부는 상관없음.
8	2008.20.10	기타 조제 또는 보존 처리한 <u>과실·견과류</u> 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설탕 또는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 첨가 여부는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함- 소매용 밀폐용기에 담긴 파인애플

9	2008.20.90	기타 조제 또는 보존 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설탕 또는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 첨가 여부는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함- 파인애플, 기타
10	2008.30.10	조제 또는 보존 처리한 <u>과실·견과류</u> 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설탕 또는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 첨가 여부는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함- 설탕 첨가 또는 그 밖의 감미료 또는 주정 첨가 감글류
11	2008.99.20	조제 또는 보존 처리한 <u>과실·견과류</u> 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설탕 또는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 첨가 여부는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함- 롱간
12	2009.11.00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오렌지 주스, 냉동한 것
13	2009.12.00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오렌지 주스, 냉동되지 않은 것, <u>브릭스</u>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은 것
14	2009.19.00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오렌지 주스, 기타
15	2009.41.00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파인애플 주스, <u>브릭스</u>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은 것
16	2009.49.00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파인애플 주스, 기타
17	2009.61.00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포도 주스, <u>브릭스</u> 값이 30을 초과하지 않은 것

18	2009.69.00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포도주스, 기타
19	2009.71.00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사과주스, <u>브릭스</u>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은 것
20	2009.79.00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사과주스, 기타
21	2009.89.99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그 밖의 한 가지 과일 또는 채소로 된 주스, 기타
22	2009.90.91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혼합 주스, 즉석 소비를 위한 것
23	2009.90.99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혼합주스, 기타
24	2103.90.11	양념 및 그를 위한 조제품, 혼합된 조미료와 혼합 건조; 겨자의 분, 조분 및 조제한 겨자-철리 소스

□ 원예작물 수입허가서(SPI)

- 원예작물을 인도네시아로 수입하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원예작물 수입추천서(RIPH) 취득 후 무역부에서 수입허가서(SPI)를 취득해야 하며, 신청 시 수입물량도 같이 기재해야 함

□ 수입절차

